■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○ ○ 공소청

(전화번호)

강집 호 . . .

수 신: 법원소속집행관 발 신: 공소청

제 목: **강제집행절차 취소(변경) 결정** 검 사 인

「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」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집행절차의 취소(변경)를 결정합니다.

납부의무자	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	() (세)		
징 제 번 호			죄 명	
집 행 명 령 연 월 일			종 류	
금 액				
취 소 사 유	금액 원을 완납했습니다.			
변 경 내 용	금액을 원에서 원으로 변경합니다.			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